



2025년 신규기관 평가 교육컨설팅 시설급여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

※ 2025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-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- 5 자체점검
- 6 기타 안내사항



목 차

1

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경기 베ㅠㄹ ㄹㄴ까ㅎ

-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- 5 자체점검
- 6 기타 안내사항



가. 평가 목적

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

- ▶ 알권리 충족·선택권 확대
 -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
 - 평가결과 공개방법 다양화

-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
 - 평가결과 하위기관 수시평가
 - 사전·사후 관리로 서비스 개선 지원



나. 평가 구분



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(E) 및 미평가기관 재평가 실시



다. 평가 방법

평가예정통보

- (1차) 정기평가 계획공고 후 30일 이내 평가일정(분기별) 사전 안내
- (2차)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'평가예정통보서' 서면 통보
- 평가일정 · 평가예정일 확인 방법

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/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기관평가 / 평가예정일 조회

기관 방문 현장평가

기본 3인 1팀 수행 … (공단평가자 2인, 외부평가자 1인)

- ※ 기관 규모 등에 따라서 평가자 추가 투입 가능
-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
- 상담·총평 후 전자조사표 전송 및 확인(불가피할 경우 복사본 교부)



라. 평가 등급 결정 및 조정

평가 등급 결정

- A등급: 평가점수 90점 이상
- B등급: 평가점수 80점 이상
- C등급: 평가점수 70점 이상
- D등급: 평가점수 60점 이상
- E등급: D등급기준을 충족하지

못하는기관

평가 등급 조정

- 행정처분 등에 따른 1개 등급 하위 조정
- 부당청구 등에 따른 등급 조정
- 최하위 등급 조정



마. 평가 결과공표

• 평가결과 공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, 수급자 제공용 '장기요양기관 현황'등

(예시)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최근 및 직전 평가결과 2회)

개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수준 ★개수 및 총점 표시

급여종류	구분	총점	기관운영		수급자	존중 서비스		스제공		서비스결과		
	A(최우수)	100	28		24		2	25	23			
입소시설 30인이상	2025 정기평가	98 ★★★★☆	27		24		24			23		
	전체평균	81	23		19		2	21		18		
급여종류	구분	총점	기관운영	환경	경 및 안전	수급자	권리보장	급여제공	ם	제공결과		
	B(우수) 2021	86.35	★★★☆☆	*	***	**	ែងង	***	*	***		
입소시설 30인이상	2021 정기평가	80.33	78		95	66		91		78		
	전체평균	83.56	78		93	76		79		84		

(예시)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

					평가		급여종류			
장으망만	정원	소재지	연락처	평가등급*	점수	기관운영	수급자존중	서비스제공	서비스결과	노인요양 시설
00요양원	00명	서울시 00구 0로 1	010 - 1234- ****	A(최우수) 2025 정기	98	27	24	24	23	0

* 평가등급 표기: 평가등급, 평가거부, 평가비대상, 신설기관



마. 평가 결과공표

평가 결과 확인 방법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기관로그인/장기요양정보시스템/기관평가/평가결과통보

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(예시) (정기)

장 기	1 ឩ 🤋	분기 된	<u></u> 명		장기	l 요양	기 관:	기호	
급	여	종	류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대	Ŧ	Ē	자	
평	가	년	도		평	가	등	급	

구	분	총 점	기 관 운 영	환경 및 안전	권리보장	급여제공	제공결과
환산 (배점	점수 비중)	100.00	15.00	25.00	11.00	39.00	10.00
점	수	90.00	13.00	22.00	10.00	36.00	9.00
전체	평균						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
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- 2. 가산지급일까지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,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





바.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

가산금 지급기준

최우수기관 가산금: 급여종류별 상위 20% 범위에 속하는 A등급

- 상위 10% 범위 내 기관: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%
- 상위 10% 초과 ~ 20% 이하 기관: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0.5%
- ※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기평가 계획공고 참고

품질개선 가산금: 하위 기관 품질 견인을 위해 신설된 가산금

- 직전 평가등급 대비 4단계 향상: 100만원
- 직전 평가등급 대비 3단계 향상: 50만원
- ※ 최우수기관(상위 20% 이내) 가산금과 중복 지급 불가(더 큰 금액을 지급)



바.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

가산금 지급 제외기준

- 평가등급 하향조정(차하위 또는 최하위)사유가 발생한 기관
- 가산 지급 전에 휴·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된 기관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
- 노인 및 직원 인권 관련 평가지표 미충족 기관
- ※ 노인인권보호(3점) 및 직원인권보호(2점) 지표합산점수 5점 미만 기관
-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 의뢰된 기관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 보류
- ※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및 평가 등급 조정
- 기타 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기관



목 차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**2**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 - 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 - 5 자체점검
 - 6 기타 안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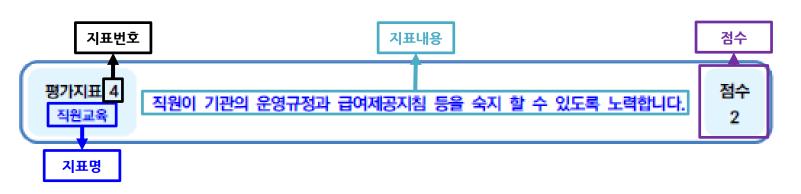
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가. 평가 매뉴얼 구성

평가 매뉴얼 구성

- **평가방향** : 평가지표의 목적
- **평가기준** :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
- **평가척도**: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
- **확인방법**: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방법
- **관련근거** :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





2 7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가. 평가 매뉴얼 구성

평가지표 4 직원교육

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점수 2

평가방향

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,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.

		평가기준	평가방법									
1	기록, 현장, 전산											
•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: 확인방법 참조												
②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규정을 면담 모두 숙지하고 있다.												
3	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.											
기준	점수	채점기준	_									
	1	①번의 13개 항목을 충족함										
1	0.75	①번의 11개~12개 항목을 충족함 (노인인권보호지침,「직원」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)										
2	0.5	평가기준을 충족함										
3	0.5	평가기준을 충족함										

■ 지표적용기간: 2022.1월 ~ 2025년 평가일

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점수 채점 기준

- 기준①,③번 "직원」 인권침해 대응지침"의 비치 및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- 기준②,③번의 신규직원 7일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
■ 확인방법

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 방법

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나. 평가 방법

평가 방법

- 기관 관련문서나 자료 등의 기록 확인, 기관 내·외부 환경 등 현장확인,
 직원 및 수급자 관찰·면담·시연, 공단 전산자료,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현황 등을 파악, 필요한 경우 **사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**
-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영수증 및 지출내역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

2 7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나. 평가 방법

평가 방법

- 분기, 반기, 연 1회 등 주기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 기준 적용,
 시행 일자 확인
-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·관리하는 경우 **개별 아이디 및** 비밀번호 로그인 원칙으로 함(단,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(1365, VMS)은 인정함)
-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일 현재, 평가 당일 평가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함(단,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)



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다.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

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

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

<u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</u>에 따라

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


2 🧗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라. 용어 설명

용어 설명

급여제공직원

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로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함

직 원

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**모든 직원(시설장 포함)**을 의미함(단,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)

평가종료월

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함

평가계획 공고월
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함

서명

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씀(점검자, 작성자, 참석자, 진행자 등 행위(제공)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함)

형가 매뉴얼 일반사항

라. 용어 설명

용어 설명

비치

잠금 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·마련



게시

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



보관

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





목 차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2 명가 매뉴얼 일반사항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- 5 자체점검
- 6 기타 안내사항



´노인장기요양보험법

가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



🦠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

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으로 한다. (시행 2019.12.12.)

- ▶ 진입요건 완화로 2024년 노인요양시설 351개소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6 개소로 총 507개소가 신규 개설, 14개소(2.8%) 폐업함('25.3.6.기준, 급여유형별)
- ▶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나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



🥦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
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 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 (시행 2019.12.12.)

※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

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장기요양기관 진입-평가-퇴출 관리 강화)

- < 평가 결과와 연계한 부실운영기관 퇴출 >
- 기관평가,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**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**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 기관 관리 강화
- : 기관평가 미흡, 행정처분 이력 등으로 갱신기준 미충족 기관은 심층평가 후 퇴출 실시('25.12월~)



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다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



🥨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

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(시행 2019.12.12.)

* 제1항 제3호의 7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


🌡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, 제69조(과태료)

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 제1항 제7호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·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



목 차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-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 - 6 기타 안내사항



가. 기관운영

💙 기관 비치 자료

기관 게시 자료

♥ 운영규정 112 항목

지표 1

- ①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규정
-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)
-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-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
-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-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-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

가. 기관운영

기관 비치 자료

기관 게시 자료

♥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

지표 4

<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>

- ① 종사자 윤리지침
-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-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
-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
-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
-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
- ①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
- ⑧ 노인인권보호지침
-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
- ⑩ 개인정보보호지침

< 기타지침 3개 항목 >

- ⑪「직원」인권침해 대응지침
- ⑫ 고충처리지침
- ③ 야간근무지침



가. 기관운영

♀ 기관 비치 자료

기관 게시 자료

♥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

지표 9

환기수칙에 따라 환기 실시,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

- 점검표 필수사항
- : 날짜, 환기시간(시작시간) 등
- 각 층마다 1개 이상 비치

(예시)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

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(예시)

점검일자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월 7일

-7	'분	1.1.	12	1.3	1.4.	1.5.	1.61	1.7.
•	£	월	화	수	목	佔	토	밀
1차 환기	환기시간	09:00						
1시 전기	전기적인	−10:00						
2차 환기	환기시간	12:00						
2시 전기		−12 :10						
3차 환기	환기시간	14:10						
01 E1	27170	-14:30						
4차 환기	환기시간	16:30						
4시 전기	2/170	−16 :50						
5차 환기	환기시간	19:30						
3작 전기	원기적산	−19:40						
6차 환기	환기시간	_						
6사 완기	퐌기시간							



가. 기관운영

기관 비치 자료



♥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⑧기 항목

지표 18(17)

- ① 운영규정 개요
- ② 종사자 근무체계(직종별 직원배치 인력, 주·야간, 평·휴일 직원 인력 등)
-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
-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⑤ 시설의 규모, 설비
- ⑥ 화재·영업·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
- ⑦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
- ⑧ 월간 프로그램 표(프로그램명, 일정 등의 정보 포함)



가. 기관운영

기관 비치 자료



♥ 노인인권보호

지표 19(18)

노인학대 신고·예방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

- 시설 내 게시
 - :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, 노인학대 유형
-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
 - : 정기간행물, 홈페이지, 홍보자료 등



가. 기관운영

홈페이지 정보게시

♥ 시군구 신고 / 홈페이지 등록 항목

지표 18(17)

(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)

- 시군구 신고 항목
 - :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직원현황, 시설현황, 급여종류, 정원,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
 - :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, 사진, 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, 비급여항목, 현원, 예약 대기자 현황, 보험가입여부
- ◆ 경로 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요양자원 / 장기요양기관 관리 /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
- ◆ 참고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공지사항 > 게시번호 61000 "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」화면 정보게시 매뉴얼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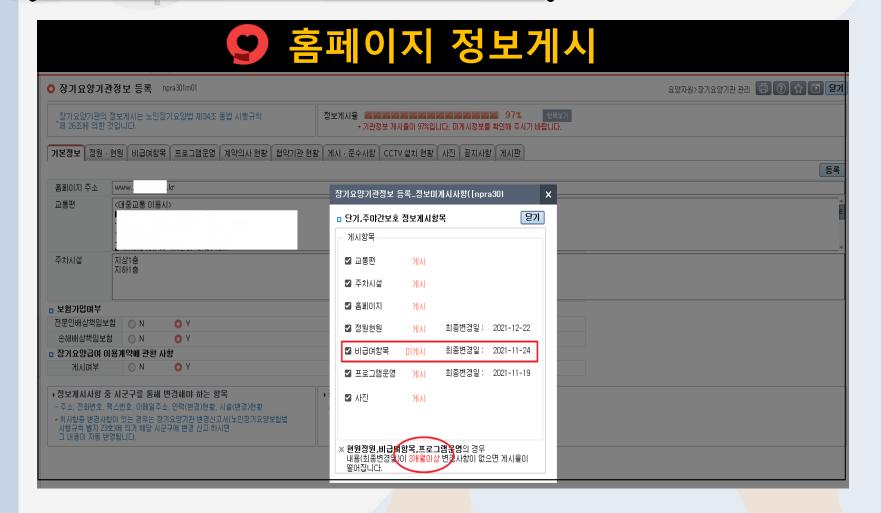
가. 기관운영

		9	홈피	테이기	디 쟏	J 보	ᆀ	시			
장기요양정보시스템	요양자원	급여계약	복지용구계약	가산및감액산정	급여비용청구	RFID	지급관리	기관평가	급여제공통합관리(시범)	급여제공서식	기타
○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	장기요양기관 관리 입소대기자 관리		장기요양기관정보 등			~	1		요양자원>장기요일	기관관리 🗐 🕜	☆ 🗷 달기
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 "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.			장기요양기관상세정 장기요양기관현황 3	10000	 97%입니다, 미게시정			71 (m)			
기본정보 정원 · 현원 비급여항목	처우개선비 교통비신청	,	협약기관 현황 게시	I · 준수사항 CCTV 설:	tl 현황 사진 공지	사항 게시!	<u> </u>	V			
홈페이지 주소 wwwki	조사자 관리 - - - - - - -	>									등록
교통편 〈대중교통 이용시〉 ► -	종사자인건비 지	ź내역 신고	! 하차								Î
- - - Obtiliza obt. 25.7.	사회복지사교육	· ·									
주차시설 지상1층 지하1층											
□ 보험가입여부											
	O Y		장	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	제1항에 따른 보험						
	O Y		사	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	제1항에 따른 책임보	.험					
□ <mark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</mark> 게시여부 ○ N	*>		나	의 블로그 > 공지사항에	게시한 후, Y로 체크						
▶ 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 - 주소, 전화변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● 위사항종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경기도 시행규칙 별지 23호)에 의거 해당 시군구 그 내용이 자동 반열됩니다.	인력(변경)현황, 시설 1양기관 변경신고서((노인장기요양보	- <u>II</u>	2게시사항 중 기관에서 통편, 주차시설, 홈페이지 전, 공지사항			#항목 <i>,</i>				

◆ 경로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요양자원 / 장기요양기관 관리 /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



가. 기관운영





가. 기관운영

홈페이지 정보게시

장기요양정	보시스템	☑ 요양자	원 급여계약	복지용	구계약	가산및감약	박산정	급여비용청구	RFID	지급관리	기관평가	급여제공통합관	리(시범)	급여제공서	식 기타				
○ 장기요양:	기관정보 등록	npra301m01										98	자원>장기요잉	기관 관리 👨	[?[☆[□	코 달기			
	만의 정보게시는 노인 1한 것입니다.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4조 동법 시행규칙		정보:			97%입니다. 미게시			목보기 <mark>다.</mark>								
기본정보 정원	원 · 현원 비급여형	목 프로그램운	영 계약의사 현황	협약기관 현	황 게시	· 준수사함 C	CTV 설치	현황 사진 공기	지사함 게시	J판									
· 사진 전체	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													L	신규 저장	삭제			
순번	분류					제목					파일	조회수	수정?	일	등록일	Ê	7		
공지	프로그램	링고		C 21-71-00	E24 H I	I A Fil					γ	492							
공지	프로그램	볼린		장기요영	3성도^		<u>В</u>	양자원 급여기	네약 복	지용구계약	가산 및감액산	정 급여비용청	RFID	지급관리	기관평가	급여제공	통합관리(시범)	급여제공	·서식 기타
공지	프로그램 프로그램	세실 동화(200	○ 장기요	t양기관	정보 등록	npra301m0	01									요양자원>장기요	양기관 관리 🛙	∂ [⑦[☆[☑]
분류제목	프로그램	٧	• 용지	장기요영 제 26조	방기관의 점 에 의한 것	병보게시는 노인? 입니다.	할기요양법	제34조 동법 시행국	구칙	정보		1월이 97%입니다. 미게.							
	0			기본정보	정원 - 현	[원 비급여항목	# # # # # # # # # # #	램문명 계약의사	현황 협약기	기관 현황 게 세	l·준수사항 CCTV	설치 현황 사진 공	지사항 게시	I₩					
내용				공지사형	기본정보 정원 · 헌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 계약의사 현황 협약기관 현황 게시 · 준수사항 CCTV 설치 현황 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/수정 전규 저장 삭제														
				순번						제목					파일	조회수	수정	일	등록일
• 첨부파일	링고리까:	우기.JPG		1	20225	년 2월	주야간보	보호센터 프로그램 일	일정표(치매전	!담)					Υ	6	2027	20.47	17
	× gif, png.	jpg, jpeg, bmp 🛎	t장자를 가진 파일만	2	20225	년 2월	주야간보	보호센터 프로그램 양	일정표(일반)						Υ	2	202		17
→정보게시사형	함 중 시군구를 통	왜 변경해야 하는	= 항목	3	장기요	2양급며 미용계	획에 관한 시	사항(주야간보호센6	크)						Υ	9	202		06
	호, 팩스번호, 이메일			4	4 2022년 1월 . 주아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표-치배 Y 5								5	2022	J1 0J	حدد د، 50			
	명사항이 있는 경우는 7 23호)에 의거 해당.				N .	고정안함		❤️ ※ 고정으로 등록			출됩니다.								
그 내용이 자동				. 4	목	2022년				(표(치매전담) (표(치매전담)									
					l용	20229			:E78 86	(보(시메인급)									
				첨누	파일			계획표 -치매.jpg mp 확장자를 가진 파		일 다운로드 파 등합니다. (4 MB									
	- 주소, 전 * 위사항경 시행규칙	화변호, 팩 : 변경사항(이 있는 경우는 질)에 의거 해당 사	소, 인력(변 기요양기관	경)현황, 시설(변경) 한 변경신고서(노인장:		- ī		에서 변경할수 있는 마지 주소, 현원, 예약대		:여항목,								



나. 종사자 관리

건강검진

건강관리

(신규)직원교육

☆ 건강검진

- ✓ 건강검진(결핵포함) 실시
- ✓ [주기] 매년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 - 대표자겸 직원·시설장, 고용 시설장 포함
- ✓ [필수사항] 5개영역
 - 계측검사, 요검사, 혈액검사, 영상검사 및 판정
- ※ 신규입사자
- :<mark>근무 시작일자까지</mark> 제출 (입사전 1년 이내 결과)

☆ 근골격계 질환

- ✓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
- ✓ [주기] 매년
- **✓ [대상]** 모든 직원
 - 대표자겸 직원·시설장 확인X
- √ [내용]
 - 일자, 검사자료, 대상자명
- ✓ 증상 있는 경우 조치
- ✓ 예방물품 구비
 - 전동침대, 목욕(이동)리프트

☆직무스트레스해소

✓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(연1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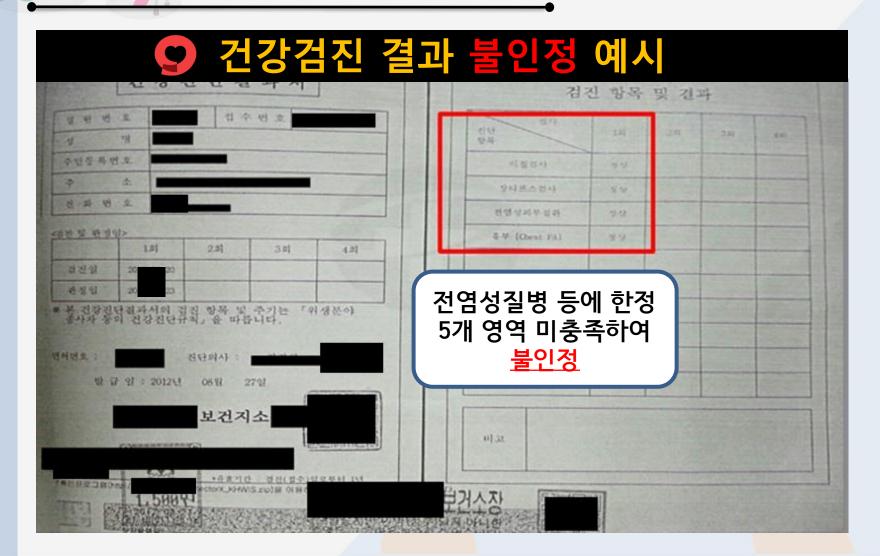
★ (신규)직원교육

면담

- ✓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교육
- ✓ [주기] 매년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- ※ 신규입사자
- :급여개시일부터 7일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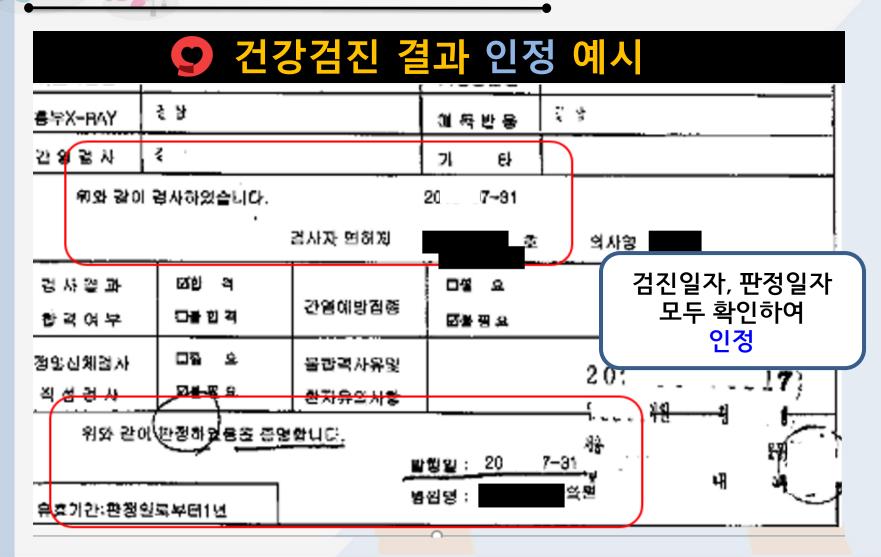


나. 종사자 관리





나. 종사자 관리





나. 종사자 관리

직원교육

- ★ 재난대응훈련
 화재발생대응훈련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✓ [대상] 모든 직원(수급자)
- ✓ [내용] 일자, 시간, 장소, 참가자명, 훈련내용, 훈련사진
- ★ 노인인권 기록 면담 및 학대 예방교육
 - ✓ [주기] 분기별 1회
 - **✓ [대상]** 모든 직원
 - ✓ [내용] 교육일시, 강사명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참석자명 (서명)

★ CCTV 영상정보 면당 내부관리계획 교육

- ✓ [주기] 연 1회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- ☆ 임종돌봄
 기록
 면답
 (생아旧기돌봄호스피스)
 교육
 - ✓ [주기] 연 1회
 - ✓ [대상] 모든 급여제공직원
- ✓ [교육자] 시설장
- - ✓ [주기] 반기별 1회
- ✓ [대상] 모든 급여제공직원

직원권익향상

- ☆ 5대 보험 가입 및 완납
- ✓ [완납증명서]
 사회보험통합장수포털
- ★복지제도 운영
- ✓ 운영규정, 사업계획에 따라 2가지 이상 운영
- ✓ 복리후생, 포상 등
 - (불인정) 회식, 상장만 제공 등

☆ 고충처리 기록 면담

- ✓ 고충처리 절차 인지, 조치 사항 면담
- ✓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수 렴 및 반영

지표 11, 19(18)

지표 15, 20(19), 26(25)

지표 3, 6



다. 수급자 관리

입소

☆ 급여계약서 작성

✓ **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**(모든 보호자·수급자)

★ 수급자 건강관리

- ✓ 결핵검진 포함 건강진단
 - 모든 수급자 연 1회 이상
 - * 신규수급자: 입소일까지 제출 (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)

☆ 직원 인권보호 안내

- ✓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,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포함하는 내용 문자 안내
 - 모든 수급자(보호자)에게 급여개시일까지 안내
 - 내용: 일자, 수급자명, 보호자명(관계), 안내방법

통합적 사정

★ 욕구사정, 위험도 평가, 인지기능 평가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√ [내용]
 - **욕구사정**(11개 항목): 신체상태, 재활상태, 질병상태, 인지상태, 의사소통, 구강상태, 영양 상태, 가족 및 환경상태, 주관적 욕구, 자원이용 욕구, 총평(서술형)
- **낙상위험도**, **욕창위험도**, **인지기능** 평가
- * 신규수급자: 급여개시 전(입소당일 포함) 실시

★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

- ✓ [대상] 신규 수급자(급여개시일부터 14일 이내)
- ✓ [기간] 3일동안(수면시간 포함 연속 72시간)
- ✔ [내용] 매 시간 섭취량, 대소변여부,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및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



다. 수급자 관리

급여제공계획

☆ 급여제공계획 수립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✓ [내용] 욕구사정, 낙상위험, 욕창위험, 인지 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 수립
- ✓ [통보] 수급자(보호자) 설명 후 확인서명 받아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(반영)일까지 공단 통보
 - 수급자명, 작성일자, 작성자명, 장기요양세부목표, 장기요양필요내용, 세부제공내용, 횟수 또는 시간, 종합의견
 - 30인 이상 시설은 물리(작업)치료 계획수립 필요
 - * 신규수급자: 급여개시 전(입소당일 포함) 실시

급여제공·결과

☆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

✓ 급여제공기록지, 간호일지, 물리치료 기록지,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으로 확인

★ 급여제공계획 변경

- ✓ [내용]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및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
- ✓ [변경사유] 기능상태 변화, 수급자 욕구 변화, 보호자 요구 등

☆ 급여제공 결과평가

- ✓ [주기] 반기별 1회
- ✓ [내용]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제공 결과 평가
- ✓ [반영]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 계획 재작성



다. 수급자 관리

상담·교육·회의

★ 수급자(보호자) 상담

- ✓ [주기] (시설) 분기별 1회 (공생) 반기별 1회
- ✓ [내용]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
 - * 신규수급자: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
- ✓ 상담결과 의견 급여에 반영(연 1회)

☆재난대응훈련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✓ [내용] 일자, 시간, 장소, 참가자명, 훈련내용, 훈련사진

★ 사례관리 회의

- ✓ [주기] (현원 30인 이상) 분기별 1회(현원 10~30인 미만) 반기별 1회
- ✓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급여 반영, 평가

퇴소·서비스 만족도

★ 전원·퇴소시 연계기록지 제공

- ✓ [내용] 전원·퇴소시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 실시후 연계기록지 작성·제공
- ✓ [확인사항]
 -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
 -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
- ✓ 사망, 미퇴소 병원 입원시 작성 제외

☆ 만족도조사(유선)

- ✓ [대상] 수급자의 주보호자
- ✓ [내용] 서비스 만족도 평가 5개 항목
- ✓ [방법] 유선,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



목 차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2 명가 매뉴얼 일반사항
-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5 자체점검



가. 자<mark>체</mark>평가, 자체점검

자체평가, 자체점검

- - **자체평가**: 모든 기관이 상시 점검 가능(정기평가 지표 기준)
 - **자체점검(신규)**: 신규 기관이 신규 운영컨설팅 사업 대상기관 선정 전 실시 (신규 운영컨설팅 점검항목 기준)

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형법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)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(평가지표) 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.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							
• 평가구분 <mark>자체점검(신규✔</mark> • 급여종류 D4.방	문요양 🔻 - 평가관리번호	∨ • 조사영역 전체 ∨					
No 자체평가 관리번호 자체점검(신규)	급여종별	장기요양기관기호	장기요양기관명칭				
ливают/							

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자체점검 등록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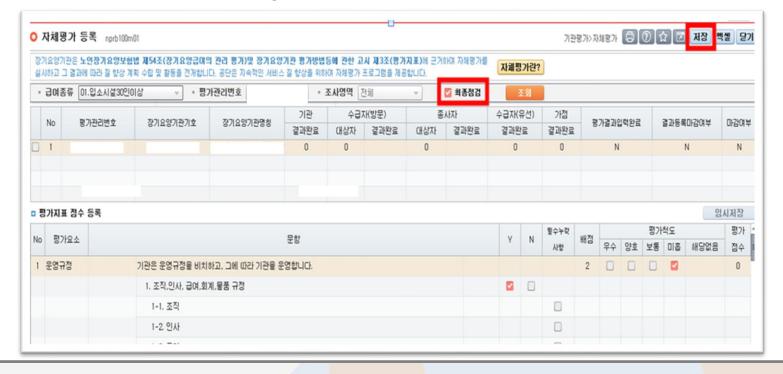
■ 등록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기관 로그인 > 업무포털 접속 > 기관평가 > 자체평가 > 자체평가 등록



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자체점검 등록 방법

■ 등록 방법: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Y 또는 N으로 체크하고 □최종점검 체크박스 클릭하고 저장(최종점검 저장시 수정 불가)



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결과 확인

■ 결과 확인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기관 로그인 > 업무포털 접속 > 기관평가 > 평가조사표

(평가구분, 급여종류, 평가연도, 평가관리번호 선택 및 조회)

● 평가조사표 nprb103m01 ● 평가구분 자체평가 ▼ ● 급여종류 04.방문요양 ▼ ● 평가년도 2025 ‡ ● 평가관리번호 ▼ 조회 □ 평가결과 목 전기평가							
No 자체평 신규운		급여종류				기관기호	
구분	총점	기관운영	환경.안전	권리 및 책임	급여제공		
해당기관		제공결과	가점지표	종사자관리	수급자관리		



목 차

-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-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-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- 5 자체점검
- **6** 기타 안내사항



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매뉴얼 및 Q&A

- - (공지)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
 - (공지)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2차) ···
 - (공지)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1차)
 - (공지)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



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매뉴얼 및 Q&A



	Long-term Care Insurance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앙보험 살던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앙보험이 만들어갑니다	k.			
	› 알립·자료실 > 정기요양 기관평가 평가 매뉴얼 및 Q&A				
	□○ -			Q 검	심색
ital 1	4 (1 / 2 page)				
	4 (1 / 2 page) 제목	작성 자	작성일	첨부	조호
변호		작성자 요양심	작성일 2025-01-22	침부	조호 694:
변호 공지	제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일 다빈도 Q&A 사				
etal 16 번호 공지 공지 공지	제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일 다빈도 Q&A 사 례집(2차)_수	요양심	2025-01-22		694:
변 호 공지 공지	제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일 다빈도 Q&A 사례집(2차)_수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	요양심	2025-01-22	8	694: 590i
변호 공지 공지	제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일 다빈도 Q&A 사례진(2차)_수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	요양심 요양심 요양심	2025-01-22 2024-12-23 2024-12-19	8	694: 590i 1416



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주요 공지사항

- ②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장기요양 기관평가> 공지사항
 - (공지)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
 - (공지) 2025년 정기평가(시설급여) 분기별 일정 확인 안내
 - (공지)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
 - (공지)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평가지표(질향상노력) 변경사항 안내
 - (게시번호 41)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안내



나.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

동영상 교육자료

- - (게시번호 66050) 2024년 장기요양기관(재가급여)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…
 - (게시번호 60049) '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' 동영상 …



나.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

동영상 교육자료



Long-term Care Insurance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살던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갑니다.							
	중사자마당 > 기관종사자 교육코너						
0	직무 관련 자료실						
	<u>■</u>			Q 검	색		
Total 50	1 (1 / 6 page)						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첨부	조호		
60050	2024년 장기요양기관(재가급여)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 내	관리자	2023-12-18		1927		
60049	'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' 동영상 자료 게 시	관리자	2023-09-26		3598		
60043	И	글러자	2023-03-26				



감사합니다

